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2		
		제정일	2001.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1/8	관리 부서	평생 교육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원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계속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8 (홍제3동 287-89)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겸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소관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교직원) ①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② 문서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을 배치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7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h2>평생교육원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4-2-2		
		제정일	2001.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2/8	관리 부서	평생 교육원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설 치 과 정

제10조(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다르며,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11조(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설치과정 등) ① 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제15조(수료 및 자격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강좌를 70%이상 출석,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1>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총장과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민간자격증<별지 2>을 교부할 수 있다.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2		
		제정일	2001.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3/8	관리 부서	평생 교육원

제 5 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

제16조(자치회)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17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8조(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19조(예산편성) 원장이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입원) 본 원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제21조(회계) ① 회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재무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원의 회계연도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7 장 민간자격 관리 운영

제22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실버활력놀이지도사 자격증 1,2급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2>평생교육원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4-2-2		
		제정일	2001.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4/8	관리 부서	평생 교육원

제23조(검정인력)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검정관리 위원회를 두어 검정관리 운영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검정기획, 인쇄, 채점 및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제24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담당위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검정기획 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3.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출제·채점 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 ③ 검정관리 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검정기준) ①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노인시설에서 어르신들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놀이를 지도하는 전문가로서의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2		
		제정일	2001.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5/8	관리 부서	평생 교육원

② 실버활력놀이지도사 기본과정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 정 기 준
실버활력놀이지도사 자격증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어르신 놀이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급	일반인으로써 뛰어난 어르신 놀이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제26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실버활력놀이지도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1,2급	필기	객관식	노인대상자의 이해, 건강유지 및 관리, 자신과 대상자의 건강증진
	실기	작업형	실버활력, 실버놀이

제27조(응시자격) 실버활력놀이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유효기간) 실버활력놀이지도사 자격은 자격취득 후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h2>평생교육원 운영 규정</h2>	문서번호	4-2-2		
		제정일	2001.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6/8	관리 부서	평생 교육원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2		
		제정일	2001.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7/8	관리 부서	평생 교육원

<별지 1>

제 ○ ○ - ○ ○ ○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 ○ ○ (인)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문서번호	4-2-2		
		제정일	2001. 03. 01.		
		개정일	2020. 11. 01.		
		페이지	8/8	관리 부서	평생 교육원

<별지 2>

제 서간○○-○○○ 호

○○○○○○ 자격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인 증 : ○○○○○○ 0급

상기인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 및 심사에 합격하였으므로 ○○○○○○ 0급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장 ○ ○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 ○ ○ (인)